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  
(Other vegetables prepared or preserved)

김용태 | 법학박사·관세사 /

(사)한국FTA원산지연구회 사무총장·건국대학교(글로벌캠퍼스) 경제통상학과 겸임교수

E REPORT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

(Other vegetables prepared or preserved)



김용태

법학박사·관세사 /

(사)한국FTA원산지연구회 사무총장·건국대학교(글로벌캠퍼스) 경제통상학과 겸임교수

## 1 HS 품목분류

‘채소’는 밭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을 말하며, 주로 그 잎이나 줄기 또는 열매 따위를 식용하는데, 보리나 밀 따위의 곡류는 제외한다. 하지만 뿌리 또는 땅속줄기를 먹는 채소인 무, 우엉, 토란, 당근, 연근, 마늘 따위는 뿌리채소로서 채소의 범주에 속한다.

HS 품목분류표상 채소류는 그 용도가 식용을 전제로 제07류나 제11류 또는 제4부에서 분류할 수 있는데, 특히 제07류에서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는 제20류에 분류한다. 따라서 제07류와 제20류의 분류기준의 차이는 제시되는 채소가 조제한(prepared) 또는 보존처리한(preserved) 상태 여부가 결정적으로 좌우한다.

제07류에 분류하는 채소의 상태는 신선·냉장·냉동(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찌서 조리한 것) 또는 일시 보존처리나 건조(탈수·



증발이나 동결건조한 것을 포함한다)시킨 방법으로 가공되어야 한다.

이에 반하여 제20류에 분류되는 채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공된 상태이어야 한다: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 설탕으로 보존처리; 균질화 공정; 주스 공정처리(발효하지도 않고 알코올을 첨가하지도 않은 것으로서,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0.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제7류·제8류·제11류나 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그 밖의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

그런데 HS 품목분류 실무에서 제시된 채소가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상태인지 아니면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상태인지 여부에 대한 쟁점이 종종 발생한다. 이하에서 실제 쟁점이 제기된 사례를 들어 각각 분류 기준을 살펴본다.

쟁점물품의 Invoice에 기재된 품명은 “ZHACAI THREAD”로 주로 중식요리의 식사용 반찬이다. 이 물품의 절임과정은 중국무(우) 85%와 정제소금 15% 비율로 섭씨 10~17도 온도의 저장고에 겹겹이 섞으면서 적층으로 넣은 다음 맨위 뚜껑을 비닐로 덮은 후에 무거운 모래

주머니로 저장고를 꼭꼭 눌러 밀봉하고 6개월 동안 발효 숙성한다. 쟁점물품의 전체 제조·가공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원재료(중국무: 직경 16~20cm) 입고 → 검수 → ② 정제소금에 절임(6개월 이상) → ③ 잔뿌리(힘줄) 제거 → ④ 세척 및 절단(3mm 두께로 채썰기) → 선별 → ⑤ 진공(멸균)포장(개당 800g) → 냉각 → 박스포장.

이와 같은 제조·가공 과정은 아래의 그림(①~⑤)과 같다.

쟁점물품이 HS 품목분류표에서 제0711호의 분류범위에 해당하려면, 두 가지 분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 하나는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채소(vegetables provisionally preserved)”에 해당할 요건과 다른 하나는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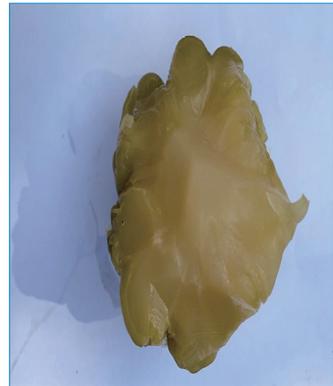
① 신선 착재



② 절임 착재



③ 잔뿌리(힘줄) 제거



⑤ 진공(멸균)포장



④ 채썰기



않은 것(unsuitable in that state for immediate consumption)”에 해당할 요건이다.

먼저,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채소”의 해당성 여부를 살펴본다.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은 그 용어가 HS 품목분류표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용어의 일상적 또는 자연적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면<sup>1</sup> 그 보존이 “영구적이지 않는 보존처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처리” 이전 상품의 본래적 용도(사용목적)와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처리” 이후 상품의 용도(사용목적)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처리”는 어떤 상품의 본래적 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상품의 본래적 용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상품의 본질적 특성에 변경을 가하는 것 — 새로운 상품을 생성하는 것 —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절임과정’ 처리 이전의 본래적 용도와 ‘절임과정’ 처리 이후의 용도가 다르다면 그 ‘절임과정’ 처리는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처리”로 볼 수 없으므로 제7011호의 용어가 허용하고 있는 적용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1 Smith v. United States, 508 U.S. 223, 228(1993) 참조.

다음으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의 해당성 여부를 살펴보자.

우리나라 관세율표가 제0711호의 용어에서 “unsuitable in that state for immediate consumption”을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국문 법문화한 것은 원문의 뜻을 올바르게 수용하여 입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관세율표가 ‘식용’ (edible)으로 번역한 ‘consumption’의 사전적 의미가 “소비자 또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the using up of goods or service, either by consumers or in the production of other goods)<sup>2</sup> 혹은 “물건을 사용하여 파괴하는 행위; 그것을 다 써 버리는 방법으로 물건을 사용하는 것”(the act of destroying a thing by using it; the use of a thing in a way that exhausts it)<sup>3</sup>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관세율표는 원문의 ‘immediate’란 단어의 의미도 생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unsuitable in that state for immediate consumption”이란 용어는 “그 상태로는 바로(추가 처리과정 없이) 소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이 법문의 뜻은 대상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가공과정이나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곧바로 의도된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식용의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쟁점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아무런 추가적인 가공과정이나 처리과정 없이 곧바로 소비자의 사용에 적합한 물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물품은 HS 품목분류표 제2005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는데, 그 세부 분류범위는 다음과 같다.



2 Webster’s New World College Dictionary, Third Edition(New York: A Simon & Schuster Macmillan Company, 1996), page 300.

3 Black’s Law Dictionary[Ninth Edition](USA: Thomson Reuters, 2009), page 359.



2005.10 ... 균질화한 채소  
 2005.20 ... 감자  
 2005.40 ... 완두(*Pisum sativum*);  
           콩(*Vigna*속·*Phaseolus*속)  
 2005.51 ... 꼬투리를 벗긴 콩  
 2005.59 ... 기타  
 2005.60 ... 아스파라거스(*asparagus*)  
 2005.70 ... 올리브  
 2005.80 ...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saccharata*);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  
 2005.91 ... 죽순  
 2005.99 ... 기타

이들 물품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제2005호로 분류하는데, 이들 물품은 흔히 캔이나 밀폐용기로 포장되어 있지만 포장한 용기의 형태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할 수 있다.

물론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제2001호)·냉동채소(제2004호)·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제2006호)는 제2005호의 분류범위에서 제외된다.

제2005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원래 모양·조각 모양이나 잘게 부순 성상(性狀)으로 바로 먹을(소비할) 수 있도록 물·토마토소스나 그 밖의 성분에 저장한다. 또한, 이들은 균질화하거나 샐러드와 같이 서로 혼합하기도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주요 조제품으로 올리브, 사우어크라우트(sauerkraut), 스위트콘[속대(cob)가 있거나 낱알 모양인 것]·당근·완두 등이 있는데, 올리브의 성상(性狀)은 소다용액으로 특별히 처리하거나 염수에 오래 침지(浸漬)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한 것이고, 사우어크라우트의 성상은 양배추를 작게 절단하여 소금에 절여서 일부 발효시켜 조제한 것이며, 스위트콘·당근·완두 등의 성상은 사전 조리한 것 또는 버터나 그 밖의 소스와 함께 조합한 것이다.

여기에서 만일 올리브를 단순히 일시 염수에 보존처리하였다면 제0711호에 분류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2005호의 분류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제2005호의 분류범위에 감자의 고운 가루·소금과 소량의 글루탐산나트륨으로 만든 얇은 직사각형 태블릿(tablet) 모양의 물품으로서, 연속적으로 가습과 탈수를 하여 부분적으로 덱스트린화 한 것도 포함되는데, 이들 물품은 몇 초간 다량의 기름으로 튀김을 한 후에 '칩(chips)'으로 식용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바삭바삭하며 짭짤한 맛의 식품(제1905호)과 채소주스(제2009호)는 제2005호에 분류될 수 없으며,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0.5%를 초과하는 채소주스도 제22류에 분류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호의 분류범위에서 제외된다.



## 2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 1. 주요 FTA에서 제07류 원산지상품의 인정기준

한-중국, 한-아세안 FTA에서 제07류에 분류되는 “식용의 채소·뿌리·괴경 등”(이하 ‘채소류’라 한다)의 상품은 해당 체약당사국에서 완전 생산되지 아니하였다면 FTA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제3국에서 수입된 채소류의 종자(제1209.91호 분류)나 종묘(제0602호 분류)를 사용하여 해당 체약당사국에서 파종·재배한 제07류에 분류되는 채소류는 FTA 원산지상품으로 취급될 수 없다.

하지만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채소류의 종자(제1209.91호 분류)나 종묘(제0602호 분류)로 해당 체약당사국에서 파종·재배한 제07류에 분류되는 채소류는 영역원칙의 예외로 누적조항(cumulation)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FTA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한-미국 FTA와 RCEP에서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이 2단위 세번변경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3국에서 수입된

채소류의 종자(제1209.91호 분류) 또는 종묘(제0602호 분류)를 사용하여 재배한 제7류에 분류되는 채소류는 FTA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다.

다만, RCEP에서는 제3국의 종자나 종묘로 파종·재배된 채소류가 제0701호 내지 제0709호에 분류된다면 FTA 특혜관세대우가 허용될 수 없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3국에서 수입된 파종용 또는 신선·냉장한 채소류를 이용하여 체약당사국에서 재배하거나 단순히 냉동·건조·밀폐용기포장한 채소류는 2단위 세번변경이 아닌 4단위 세번변경만 발생하므로 FTA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한-미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한-중국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한-아세안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RCEP	제0701호~제0709호	완전생산기준
	제0710호~제0714호	2단위 세번변경기준

## 2. 주요 FTA에서 제2005호 원산지상품의 인정기준

한-미국, 한-중국 FTA와 RCEP에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의 상품은 해당 체약 당사국에서 가공·생산된 조제품의 원재료가 제3국에서 수입된 경우 제20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FTA 원산지상품으로 취급된다.

여기에서 한-미국 FTA에서는 제3국에서 수입된 원재료가 제0701호에 해당하거나 해당 체약 당사국에서 조제 또는 저장처리(냉동, 포장 또는 볶음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정을 포함한다)하여 완성된 조제품이 냉동, 물·소금물·천연주스를 사용한 포장(통조림 포장을 포함한다) 또는 볶음(건조상태 또는 기름의 사용)의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세번변경기준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 경우 만일 해당 원재료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것이라면 영역원칙의 예외로 누적조항(cumulation)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FTA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한편, 한-아세안 FTA에서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가 FTA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려면 제3국의 원재료를 사용한 해당 체약당사국에서 완성된 조제품을 가공·생산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FOB 가격기준으로 40퍼센트 이상이 발생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완성된 조제품이 김치에 해당한다면 역내부가가치 발생기준은 60퍼센트로 강화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소호 제2005.10호 내지 제2005.80호의 완성된 조제품은 해당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미만이라 하더라도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한-미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7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20류의 주석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정한다.	
한-중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한-아세안	제2005.10호 ~제2005.80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2005.91호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2005.99호	① 김치: 6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② 기타: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CEP	2단위 세번변경기준	

투입된 제3국의 원재료가 제2005호를 제외한 제20류에 분류된다면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다.

\* <제20류의 주석>: 냉동, 물·소금물·천연주스를 사용한 포장(통조림 포장을 포함한다) 또는 볶음(건조상태 또는 기름의 사용)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냉동, 포장 또는 볶음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정을 포함한다)한 제2001호부터 제2008호까지의 채소·과실 및 견과류 조제품은 채소·과실 및 견과류(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체약당사국에서 전부 생산된 경우에만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

#### 참고문헌

김용태, FTA 원산지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두남, 2022)  
오수교(편저), 관세율표법령집[HS제7차개정판]  
(서울: 세인북스, 2022)  
Black's Law Dictionary[Ninth Edition]  
(USA: Thomson Reuters, 2009)  
Webster's New World College Dictionary,  
Third Edition(New York: A Simon &  
Schuster Macmillan Company, 1996)

